



#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

수신자 전 회원사

## 제 목 전세버스 차령 연장 관련 유의사항 알림

---

1.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-1714('24.03.14)와 관련입니다.

2. 국토교통부에서는 '21.08.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시 전세버스 기본차령을 기존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토록 개정하면서 기존에 한시적으로 차령을 연장한 차량(코로나19로 인한 운수업계의 경영상 어려움 경감)에 대하여는 기본차령을 1년만 적용하여 규정한 바 있습니다.

3. 현재 일부 시·도에서는 전세버스 차령연장과 관련하여 관련 법 규정의 잘못된 해석으로 '20년도 한시 연장된 차량에 대하여도 기본차령 2년을 적용하여 최대14년을 판단하고 차령연장을 허가해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잘못된 행정에 대한 민원 및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.

4.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령연장 행정 업무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규정을 준수하여 행정업무 처리토록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 온바, 현행 전세버스의 최대 차령은 13년임을 재차 알려드리오니, 각 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서전버조 24- 57호(2024.03.15)

= 아 래 =

가.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장차령 2년 적용 시 최대 차령은 13년

나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시행령 부칙(대통령령 제31964호, 2021.8.31.)에 따라  
별표2 제1호 비고 가목에 따라 차령 기간이 더해진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한 차령은 1년  
이므로, 현행 전세버스의 최대 차령은 13년임.

※ 붙임 : 국토교통부 공문 1부. [끝]

※ 붙임자료는 조합홈페이지([www.tourbus.or.kr](http://www.tourbus.or.kr))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  
이사장 오 성



과 장 박영수 부 장 라영석 상 무 박호동 이사장

협조자

시행 서전버조 24- 57호 ( 2024.03.15 ) 접수 ( )  
우 055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(교통회관 11층) / <http://www.tourbus.or.kr>  
전화 02-422-0019 전송 02-418-0071 / / 공개

"안전띠는 생명띠 정지선은 생명선"